## 충남연구원 부패방지 방침

충남연구원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신뢰, 공정, 개방, 투명의 가치속에서 도민, 도정과 소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한다.

- 1. 충남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금품, 향응, 편의 및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.
- 2. 충남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해외부패방지법(미국,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)」, 「뇌물수수법(영국, Bribery Act)」 등 모든 부패와 관련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령 및 연구원의 규정을 준수한다.
- 3. 충남연구원장은 부패방지책임자에게 부패 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,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.
- 4. 충남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을 인지할 경우 즉시 부패방지책임자에게 제보하고, 부패방지책임자는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,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.
- 5. 충남연구원은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, 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.
- 6. 충남연구원은 부패방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발전시킨다.

2022년 00월 00일 충남연구원장